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sup>1)</sup>

## 입법 취지

-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외부의 경제활동·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보장 확보에 관한 경제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경제안전보장에 필요한 제도를 창설한다.

## 구성

### 1. 기본방침의 책정(제1장)

- 경제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 어떻게 안정보장을 확보할 것인지, 경제안전보장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안정공급확보 기본지침」)을 책정
- 다만, (국내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조치는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보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로 국한

### 2.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제도(제2장)

- 국민의 생존이나 민생·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중요물자의 지정, 민간사업자의 계획 승인(認定), 정부의 특별대응 조치를 실시

「특정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특정중요물자의 지정	기업의 계획 승인·자원조치	정부의 대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이거나 민생·경제활동을 좌우하는 물자로서, 안정적 공급 확보가 필요한 물자를 정부가 지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민간사업자는 「특정중요물자」의 공급확보 계획을 작성하고 소관 부처 장관이 인증</li><li>•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은 인증사업자에 자금지원(조성/2단계 용자) 실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 장관은 비축 등 필요한 조치 실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관 부처 장관의 사업자에 대한 조사</li></ul>

### 3.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관한 제도(제3장)

- 기간인프라의 중요설비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설비의 도입·유지관리의 위탁에 대한 사전심사, 권고·명령 등의 조치 실시

1) 정식명은 「경제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것에 의한 안전보장의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안」(經濟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임. 2022년 3월 17일 일본 국회에 상정되어 4월 7일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됨.

「기간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p><b>심사 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사업: 법률에서 대상 사업의 범주(예, 전기사업)를 예시하고, 시행령(政令)에서 구체화</li> <li>대상 사업자: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시행규칙(主務省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li> </ul>	<p><b>사전 신고·심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설비」의 도입·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계획서의 사전 신고</li> <li>사전심사기간: 원칙상 30일(경우에 따라 단축·연장 가능)</li> </ul>	<p><b>권고·명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방해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중요설비의 도입·유지관리 내용의 변경·중지 등)를 권고·명령</li> </ul>
--	--	---

4.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지원에 관한 제도(제4장)

- 첨단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자금지원, 협의회 설치, 조사연구업무의 위탁 실시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p><b>정부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제공·자금지원</li> </ul>	<p><b>민관파트너십(협의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연구개발 프로젝트 단위로 연구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li> <li>구성원: 유관 행정기관 장(長), 연구대표자/종사자 등</li> <li>상호이해 하에 공유되는 비밀(민감)정보는 구성원에 비밀유지 의무 부과</li> </ul>	<p><b>조사연구업무의 위탁 (싱크탱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기술」의 조사연구를 일정한 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위탁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li> </ul>
---	---	--

5.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제5장)

- 안전보장 상 민감한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공개나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고 특허법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전지정을 하고 공개를 유보하는 제도나 외국출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

특허출원의 비공개

<p><b>특정기술분야 스크리닝(제1차 심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청은 특정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의 특허출원을 내각부에 송부</li> </ul>	<p><b>보전 심사(제2차 심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과 발명을 비공개할 경우 산업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li> </ul>	<p><b>보전 지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 효과: 출원 취하 금지, 실시의 허가제, 개시 금지, 정보의 적정관리 등</li> </ul>	<p><b>외국 출원 금지</b></p> <hr/> <p><b>보상</b></p>
---	--	---	---

시행 기일

-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내~2년 이내(단계적 시행)

## 제2장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

### 입법 취지

- 국민의 생존과 민생·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물자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도모하고, 중요한 물자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강구하는 제도를 정비
- 정부는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야 하는 물자(「특정중요물자」)를 지정. 주무장관은 민간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공급확보계획」을 심사·승인하고 지원조치를 실시. 민간지원만으로는 대응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특별대책」을 실시

### 개요

#### 1. 정부(총리)는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기본지침」 책정

#### 2. 「특정중요물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구체적 품목은 시행령(政令)에서 지정 예정

특정중요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 또는 민생·경제활동을 좌우하는 물자로서, 해당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계·기기, 장치를 해외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할 우려가 있어 외부 행위에 의해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우려되는 물자</li> <li>•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자의 생산기반 정비, 공급원의 다양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개발·개량 등 공급망 강화 대책 또는 물자의 사용 합리화, 대체 물자의 개발 등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li> </ul>
--------	---

- 현재로서는 반도체, 희토류, 첨단배터리, 의약품 등이 거론되고 있음.

#### 3. 「안정공급확보 대책 방침」의 책정

- 주무장관은 특정중요물자 또는 그 원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방침을 책정

#### 4. 민간사업자의 「공급확보계획」 제출·승인과 지원조치

- 민간사업자는 특정중요물자의 안정공급확보 대책\*에 관한 계획(「공급확보계획」)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단 공급확보계획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

공급확보계획	<p>▲안정공급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특정중요물자의 품목 ▲안정공급확보 대책의 목표, 내용, 추진 기간, 추진 체제 ▲안정공급확보 대책에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조달방법 ▲안정공급확보 대책 추진 조치 ▲안정공급확보 대책에 관한 정보관리 체제 ▲공급확보계획 작성자(사업자)의 해당 특정중요물자 등의 조달 및 공급 또는 사용 현황</p>
--------	--

- \* 일반적으로 공급망 확보 대책이란 생산기반 정비, 공급원의 다양화, 비축, 생산기술개발, 물자의 사용 합리화, 대체물자개발 등을 말함.

-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조치를 제공: (1)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

을 통한 보조금 지원 및 금융기관 이자 보조금 지원 (2)일본정책금융공고법의 특례 적용 (Two-stage Loan 제공) (3)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적용 (4)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적용

\*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규칙(主務省令)에서 지정 예정

## 5. 정부의 「특별대책」이 필요한 특정중요물자의 지정과 대책

- 주무장관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도 안정공급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시행령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할 수 있음.
- 특별대책으로는 비축 등 안정공급확보 조치와 가격 급등 이전의 표준가격(시행령으로 정한 가격)으로의 물자 양도·대부·사용을 거론

## 6. 특정중요물자 시장 환경의 조성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주무장관은 동일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작성·제출한 공급확보계획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음.
- 관세정률법과의 관계: 외국에서 생산·수출 보조금을 받은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의 덤핑 수출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가격폭락 등 예상치 못한 사태에 의해 특정 화물 수입이 폭증한 경우, 주무장관은 조사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부처 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

- 주무장관은 특정중요물자의 생산·수입·판매 사업자에 대해 해당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생산, 수입, 판매, 조달 또는 보관 상황에 관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주무장관으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그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해야 함. (당초, “기업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 삭제)

**시행 기일**

- 법률 공포 후 9개월 이내(2023년 3월 예정)

## 제3장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입법 취지

- 기간인프라 서비스(전기·가스·수도 등)의 안정적 제공은 안전보장 상 중요한 과제
- 기간인프라의 중요설비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방해하는 외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설비의 도입·유지관리 등의 위탁을 사전 심사

### 개요

1.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 책정
2. 심사대상

(1) 대상 분야(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상사업의 범주를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압축)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철도
화물자동차운송	외항화물	항공	공항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2) 대상 사업자는 주무장관이 지정

-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중요설비(구체적인 중요설비는 시행규칙으로 지정)의 기능이 정지·저하된 경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가·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심사(중요설비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방해하는 외부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지 여부)

- 심사 결과, 중요설비가 외부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 방해 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중요설비의 도입·유지관리 내용의 변경·증지)를 권고
- 권고 후 10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 권고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나 수락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권고 조치를 명령

4. 주무장관의 책무

- 대상 사업자에 방해 행위 방지 관련 자료 제공

5. 기타

- ‘특정사회기반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특정중요설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계획서’를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혹은 병과)” 부과. 정부가 계획서 수정을 명령하였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벌칙을 부과

### 시행 기일

- ①심사대상→ 법률 공포 후 1년 6개월 이내 ②심사·권고·명령→공포 후 1년 9개월 이내. 단 대상 사업자 지정 후 6개월간은 경과조치로서 미적용

## 제4장 첨단 중요기술의 개발지원

### 입법 취지

- 첨단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은 중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  
본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불가결
- 이에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을 책정함과 동시에 자금지원, 민관동반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 조사연구업무의 위탁을 추진

### 개요

#### 1.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의 책정과 국가시책

- 정부는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책정
- 본 지침에 의거하여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제공·자금지원을 실시

특정중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첨단 기술 중에서도 외부가 해당 기술 또는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에 활용되는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외부의 방해 행위에 의해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li><li>• 구체적으로는 우주·해양·양자·AI 분야의 첨단기술을 상정</li></ul>
--------	--

#### 2. 협의회 설치

- 정부자금으로 수행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중 특정중요기술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교부하는 장관(‘연구개발 장관’)이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개별 연구개발 프로젝트별  
로 연구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를 설치. 필요 시 구성원 추가 가능
- 협의회 구성원: ‘연구개발 장관’, 유관 행정기관 장, 연구대표자/종사자, 「특정중요기술조사연  
구기관」(후술)
- 협의회 기능: 연구개발 추진에 유용한 시즈(seeds)·니즈(needs) 정보의 공유, 실용화를 위  
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협력 등.
- 단, 협의회 구성원에게는 국가공무원에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대상  
정보로는 기존 연구개발 성과,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등을 상정

#### 3. 지정기금

- 총리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8년)\*에 의거하여 5개 ‘자금배  
분기관’\*\*에 설치하는 기금 중 일부를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목적의 「지정기금」(소위 ‘경제  
안전보장 기금’) 으로 지정

\* 2021년 '자금배분기관'으로서 5개 기관\*\*을 지정하였고,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JST에 기금(2021년도 추경예산, 2,500억 엔)을 설치함. 향후 5,000억 엔 규모로 확대 예정

\*\*일본학술진흥회의(JSPS),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農研機構, NARO)

#### 4. 조사연구업무의 위탁

- 총리는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그 성과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를 일정한 능력을 갖춘 기관(「특정중요기술조사연구기관」)에 위탁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 5. 벌칙

- 관계자(협의회 구성원, 특정중요기술조사연구기관 종사자)가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시행 기일

- 법률 공포 후 9개월 이내(2023년 3월 예정)

## 제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

### 입법 취지

-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공개 등 절차를 유보하고, 필요한 정보보전 조치를 강구하여 특허절차를 통한 민감기술의 공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안전보장 관점에서 특허출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발명자에게 특허법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개요

#### 1.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기본지침 책정

#### 2. 기술분야 등에 따른 스크리닝(제1차 심사)

- 특허청장은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큰 발명이 포함될 수 있는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출원을 내각부에 송부
  - \* 핵기술, 첨단무기기술 등 가운데 후술 3.의 ①② 관점에서 압축한 것
- 제1차, 제2차 심사 및 보전지정 기간 중에는 출원공개 및 특허사정을 유보

#### 3. 보전심사(제2차 심사)

- 「보전심사」(=발명 정보를 보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심사) 시 고려 요소
  - 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의 정도
  - ② 발명을 비공개로 한 경우에 산업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 내각부는 심사 시, 정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의 협력을 구하고, 정부 관계기관과 협의
- 보전지정을 하기 전, 출원인에 대해 특허출원을 유지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

#### 4. 보전지정

- 「보전대상발명」을 지정, 출원인에게 통지
  - \* 지정기간: 1년 이내, 이후에는 1년마다 연장 여부를 판단
  - \* 지정효과: △출원 취하 금지 △발명 실시의 허가제 △발명내용의 개시 원칙금지 △발명 정보의 적정관리 의무 △다른 사업자와의 발명 고유 승인제 △외국출원 금지

#### 5. 외국출원제한(제1국 출원의무)

- 일본에서 실시한 2개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에 대해 우선 일본에 출원하지 않으면 안되

- 는 제1국 출원의무를 규정(특허청에 해당 여부 사전 상담 가능)
-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출원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혹은 병과)”을 부과

## 6. 보상

- 발명 실시(특허법 제2조. 생산, 사용, 양도, 수출입 등을 제안하는 행위)의 불허 등에 의해 손실을 본 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시행 기일

- 법률 공포 후 2년 이내(2024년 6월 예정)